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추가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서 전기설비 허용
- 2)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허용

나.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 1) 생활기반시설과 같이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하고 준수사항 규정

다. 음식점 허용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5조제2호 개정)

- 1) 환경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음식점의 면적 등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 개선
- 2) 기존 공장·주택의 증축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6조 삭제)

- 1) 「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2.1.29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전단 중 “도로·철도”를 “도로·철도 및 전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도서관”을 “도서관,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불가피하게 추가로”를 “불가피하게”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

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2) 시·도지사가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3)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치·운영계획(시설규모, 위치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마련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

일 것

제1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1개소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낮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통해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하는 경우

다.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야 하고, 해당 음식점의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이행할 것

제13조제6호(종전의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도서관, 군사시설(용도폐지된 경우만 한

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을 “용도변경 및 증축(원거주민이 용도변경 및 증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를 “바닥면적의 합계 및”으로, “초과해서”를 “각각 초과해서”로 하며, 같은 1) 다)을 삭제하고, 같은 1) 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며, 같은 1)에 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1) 나)(종전의 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를 “각 수질기준항목의 25퍼센트”로, “총”을 “150제곱미터 및 총”으로 하며, 같은 1) 다)(종전의 나)) 중 “적절하게 설치하여”를 “설치하여”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를 “처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하는 환경정비구역은 150제곱미터 및 총 호수(戶數)”로 하고,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 중 “이하”를 “이하(1)가) 단서 및 같은 1) 나)·다)에 해당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1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100제곱미터 및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

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를 총 호수(戶數)의 5퍼센트로 고시한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라)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정비구역은 100제곱미터 및 총 호수(戶數)의 5퍼센트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8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 ----- -----.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u>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u> 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 ----- <u>도로·철도 및 전기설비</u> ----- -----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	라. ----- ----- -----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다음의 시설

1) ~ 4) (생략)

<신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미
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
의 교육원 또는 같은 호 바
목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
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2)·3)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

마. -----

--- 도서관, 같은 표 제12
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

1) -----

---- 불가피하게 ----

2)·3) (현행과 같음)

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바. (생략) 2. ~ 9. (생략)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일 것</u> 2) <u>시·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u> 3) <u>시·도지사가 시설의 설 치·운영계획(시설규모, 위치 등을 포함한다), 환 경관리계획(오수,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 을 마련하여 해당 유역환 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 장과 협의한 경우일 것</u> 사. (현행 바목과 같음) 2. ~ 9.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퍼 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 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u>
---	---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1개소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낮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통해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하는 경우

다.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야 하고, 해당음식점의 운영계획(규모,

4. (생 략)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u><신 설></u>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u>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이행할 것</u>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도서관, 군사시설(용도폐지된 경우만 한정한다)</u>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 ----- -----.
---	--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illegible]

라. _____

– 12 –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 설>

----- . -----

- 바닥면적의 합계 및 - -

----- 각

각 초과해서---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100제곱미터 및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

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하여 하수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신 설>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
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
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
외한다)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의 증축

----- 설치하여 -----

----- 처리하고 상수
원보호구역 외 지역으
로 방류하는 환경정비
구역은 150제곱미터
및 총 호수(戶數)-----

-

<삭 제>

라)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정
비구역은 100제곱미
터 및 총 호수(戶數)
의 5퍼센트

2) -----

-- 이하(1)가) 단서 및 같
은 1) 나)·다)에 해당하
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1
50제곱미터 이하)-----

마. (생 략) <u>제26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21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u> <u>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u> <u>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보호구역</u> <u>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u>	- 마. (현행과 같음) <u><삭 제></u>
--	---